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8
----------	----

2022. 10. 21.(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2년 10월 5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12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10월 17일

-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중근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사유

- 2021. 12. 7.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고, 위원회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늘리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안 제5조제1항)
-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피신청 대상이 된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에서 회피하도록 의무를 부과(안 제10조의2제3항)

3. 검토보고 요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의 안건 심의에 있어 회피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5조는 충청북도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를 현행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한 것임.
 - 본 개정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1항(개정 2021. 12. 7.)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
 - 또한, 위원회 위원 수를 늘림으로 인해 강화된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안 제10조의2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안전 심의에 있어 위원의 회피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본 개정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해당 안전 심의에 대해 회피할 것을 의무화 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전의 당사자이거나 안전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전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의 안전 심의에 있어 회피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된바 법적으로 타당하며,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② ~ ④ (생 략)</p> <p>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② (생 략)</p> <p>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u>회피할 수 있다</u>.</p>	<p>제5조(구성) ① ----- ----- <u>20명</u> ----- <u>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회피하여야 한다</u>.</p>

관계법령 발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및 운영
-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지역 내 보육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보육정책위원회 운영

3. 관련조문

- 안 제5조(구성), 안 제11조(위원회 수당)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충청북도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수당 지급

나. 추계의 전제 : 2022년 위원회 참석수당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산출기초	비고
위원회 수당	8,000	- (출석수당) 20명×100천원×4회	

다. 추 계 결 과 : '22년부터 향후 5년간 총 40,000천원 정도 소요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세 출	40,000	8,000	8,000	8,000	8,000	8,000
위원회 수당	40,000	8,000	8,000	8,000	8,000	8,000

※ 정책기획관 위원회 POOL 수당에서 지급

6. 작성자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서동경